의 번 호

1594

【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. 12. 3.(화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9. 12. 3.(화)
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9. 12. 12.(목)

2. 제안이유

행정환경에 부응하는 조직운영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구본청의 실·국별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담당신설ㆍ이동 및 명칭변경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
 - 1) 기획예산실
 - 가) 공보행정을 구정홍보로 명칭변경(안 제4조의2제9호)
 - 2) 주민자치국 : 통신 삭제(안 제5조제2항제4호)
 - 3) 복지경제국
 - 가) 생활지원을 복지정책으로 명칭변경(안 제6조제2항제1호)
 - 나) 경제정책, 산업진흥, 전통시장, 농업, 축산업 등에 관한 사항 보완 및 명칭변경(안 제6조제2항제4호)
 - 4) 안전도시국
 - 가) 통신관제 추가(안 제7조제2항제1호)
 - 나) 도시디자인을 경관디자인으로 명칭변경(안 제7조제2항제5호)
 - 다) 공원관리, 녹지관리, 산림휴양, 정원정책 등에 관한 사항 보완 수정(안 제7조제2항제6호)

4. 근거법규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- 나.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

5. 검토의견

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조직운영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구본청의 실·국별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.

근거법규

□ 지방자치법

- 제112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 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 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 -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·자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·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
 -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 -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, 6급 이하의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- 제13조 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 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·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 - 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 - 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관할 시·군·구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.
 -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 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